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I. 제안경위

1. 임규호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출자 : 임규호 의원 외 23명

나. 의안번호 : 제3244호

다. 제출일자 : 2025. 10. 20.

라. 회부일자 : 2025. 10. 23.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출자 : 성흠제 의원 외 20명

나. 의안번호 : 제3245호

다. 제출일자 : 2025. 10. 20.

라. 회부일자 : 2025. 10. 23.

II. 제안사유

1. 입규호 의원 대표발의안

-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서울시의 자전거 지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 서울시는 하천변, 공원, 일반도로 등 다양한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왔으나, 현행 조례는 여전히 도로 인프라 중심의 설치에 머물러 시민 생활권과 여가·경관을 고려한 종합적 자전거 인프라 조성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2009년에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자전거도로의 설치’ 조항은 당시 도시개발 중심의 교통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의 생활권 중심·친환경 교통 여건에는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한강 및 불광천 등 하천·공원형 자전거도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도심 일반도로와의 연계성, 이용 편의성, 경관 조화 등을 반영한 설계 기준도 여전히 미비함
-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재된 구간에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이 필요함

- 이에 하천·공원 등 녹지 공간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동선 분리 설계 원칙을 신설하여,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임규호 의원 대표발의안

-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활용한 ICT 기반 안내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 자전거도로 설치 시 기존 도시개발 중심의 설치 기준 외에, 하천 및 공원 등 시민 여가·녹지 공간과 연계하여 경관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설치 방안을 추가함(안 제3조의2제1항제4호 신설)
-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동선 구분 및 분리 설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IV. 참고사항

1. 임규호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간 : 2025. 10. 28. ~ 2025. 11. 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계기관 의견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시는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자전거도로 지도 구축 및 정보제공 등을 기 시행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 및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한 조례 개정안에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함
 - ※ 스마트서울앱 자전거도로 테마지도 운영으로 자전거도로 전자지도 구축 시행중
 - 자전거도로 고시(신설, 변경, 폐지) 수시 반영으로 현행화 지속
 - 민간 지도플랫폼에 전자지도상 자전거도로 정보를 제공(스마트서울앱 내 OpenAPI 형식으로 자전거도로 데이터 제공)

2. 성흡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1) 보행자전거과-17379호('25.12.5.)

다. 입법예고

- 기간 : 2025. 10. 28. ~ 11. 0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2)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하천·공원 등 녹지 공간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동선 분리 설계 원칙을 신설하여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함
- ▶ 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제12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시 한강 등 하천 및 공원과의 연결을 고려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등 각종 민·관 개발사업 시 자전거도로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성이 설계 및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및 검토하고 있음
- ▶ 또한 보행자 및 자전거의 이용 편의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자전거-보행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형태인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우선 구축하고 있음

2) 보행자전거과-17379호('25. 12. 5.)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1. 임규호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자전거도로 전자지도와 이를 활용한 안내시스템을 구축·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25년 상반기 기준 1,426개 노선, 1,363km의 자전거 도로와 함께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등 4,846개소의 자전거 주차시설³⁾을 운영중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13조제2항⁴⁾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자전거도로 노선을 중심으로 자전거 통행로, 자전거횡단도, 주차시설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

3)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현황 : 4,846개소, 125,939대

구 분	계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이외 주차시설
지점(개소)	4,846	30	6	4,810
거치대수(대)	125,939	5,330	130	120,479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보관)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 자전거횡단도, 주차시설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함한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서울맵5)을 구축하여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6) 정보를 시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교통-자전거·보행-자전거-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에서도 관련자료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자전거길 안내지도7)’를 제작 및 운영하는 한편 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위치에 따른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중임
- 따라서 시장이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안내시스템을 개발 및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법 관련 규정과 서울시 현황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전거법은 자전거도로 이외 자전거횡단도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지도 제작 및 보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서울시 자전거 지도상 미표기된 사항에 대해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홈페이지 주소 : <https://map.seoul.go.kr/>

6) 자전거주차시설, 수리시설(14개소), 공기주입기(1,538개소)

7) 2025 서울 자전거길 안내지도 제작계획(보행자전거과-8301호, '24.11.26.) : 5천부 제작 배포

2. 성흡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 등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하천 및 공원 등 시민여가 공간과 연계하는 설치 방안과 교통약자 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 조성시 보행자 동선과 분리하는 설계방안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 제3조의2⁸⁾에서는 시장과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⁹⁾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등의 내·외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과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방안 등을 자전거도로 설치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도로 설치시 하천 및 공원 등의 여가·녹지

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시장과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내·외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간 연계 등을 고려하고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동선분리 설계 방안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 친화적인 자전거도로 조성과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기존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¹⁰⁾의 형식적인 구분과 별개로 서울시 만의 통행특성, 통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역의 특성과 용도 등에 따른 자전거도로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으며 [별첨 1 참조]

이중 독립형 자전거전용도로¹¹⁾의 경우 “하천, 공원에 설치되어 여가, 운동, 레저에 이용되며 보행자 관점에서는 물리적으로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1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6. 9.>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11)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2장 설계 기본사항 2-2 서울형 자전거도로의 구분

- 1) 자전거 전용도로

- (1) 독립형

- 독립형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등 통행만을 위해 설치되는 형태로 강변, 하천,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장거리 통행 및 여가, 운동, 레저 등의 활동에 이용되는 도로를 의미한다.
- 독립형 자전거전용도로는 차량과 보행자는 물리적, 지형적으로 분리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¹²⁾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하천 및 공원 등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도모하고 교통약자 등 보행자 안전을 증진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1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첨 1]

〈횡단구성에 따른 서울형 자전거도로의 유형〉

구분	세분류	특 징	비고
1)자전거 전용도로	(1)독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통행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도로 ○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주간선축을 형성하며, 장거리 통행 및 여가활동에 이용 	분리 시설 없음
	(2)차도높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에 분리시설(연석, 펜스, 안전봉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차량과 분리한 도로 	분리 시설 있음
	(3)보도높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또는 차도의 일부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차량이 침범할 수 없도록 보도와 같은 높이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형태 ○ 보도에 분리시설(식수대, 화단, 펜스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보행자와 분리한 도로 	
2)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1)분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에 노면표시 또는 마감재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시각적으로 분리한 도로 ○ 전체적 공간은 겸용하되, 이동동선 및 통행로를 보행로와 분리 	분리 시설 없음
	(2)비분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도로 ○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만 전용도로 설치 등 별도의 공간 확보 및 통행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 설치 	
3)자전거 전용차로	(1)일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에 노면표시(차선포함)등을 설치하여 차량과 시각적으로 분리한 도로 ○ 노면표시 외에 표지병, 사과석 포장 등을 통한 입체적인 분리시설 보완 	분리 시설 없음
	(2)갓길주차 허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가장자리에 자동차 주차를 허용한 도로 ○ 갓길주차공간과 보도 사이에 설치되는 형태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도로 	
4)자전거 우선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도로(도로교통법의 차도상 자전거 통행 방법과 유사) ○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기법을 적용 	분리 시설 없음